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: 2026. 8. 13.
발 의 자: 이강무 의원
찬 성 자: 채승우 의원, 정동배 의원,
전 정 의원, 최상진 의원,
김언주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」 및 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활동기간: 2026년도 제334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나. 구성인원: 13명 이내
- 다. 활동내용: 제334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「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」 및 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 부의
- 라. 구성방법: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로 선임

3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- 다.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10조(특별위원회)
- 라.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0조(예산안 심의)

■ 관련법규

【지방자치법】

▶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【지방재정법】

▶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】

▶ 제10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,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.
-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의회는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】

▶ 제60조(예산안 심의)

-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-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